

원산지 표시

어떤 품목이 **추가** 되나요?

표시방법은 어떻게 바뀌나요?

2013. 06. 28 부터는

『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·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배추김치의 고춧가루, 배달용 돼지고기, 양(염소 등 포함)고기, 명태, 고등어, 갈치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시키며, 음식점 수족관에 살아 있는 모든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합니다.



대상 음식점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위탁급식영업, 집단급식소



대상품목

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을 현행 쇠고기, 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16개품목으로 4개품목 추가, 3개 품목을 확대 하였습니다.

현행품목	추가품목	확대품목
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쌀, 배추김치, 광어, 우럭, 낙지, 참돔, 미꾸라지, 뱀장어	양(염소 등 포함)고기, 고등어, 갈치, 명태 (황태, 북어 등 건조품 제외)	배추김치의 고춧가루, 배달용 돼지고기,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



표시방법

1.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, 표시 위치 및 배추김치 표시방법 등을 개선하였습니다.

	현행	개정
글자크기	음식명 1/2 이상	음식명과 가격 크기와 동일 또는 크게 표시
표시위치	규정 없음	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 또는 밑에 표시
배추김치	배추만 표시	배추와 고춧가루 함께 표시
혼합 표시	규정 없음	섞임비율이 높은순으로 표시 표시의 예) 갈비탕(호주산, 국내산 한우) :호주산이 국내산 한우 보다 많이 사용되었다는 의미

2.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**메뉴판, 게시판**에 표시합니다. 다만 영업장에 메뉴판, 게시판 중 어느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 표시하면 됩니다. **원산지 표시판**을 제작하여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메뉴판,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.

※ 원산지 표시판은 가로×세로 또는 세로×가로 : 21cm × 29cm 이상, 글자크기는 30포인트 이상입니다.

3.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·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,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보관, 진열하는 재료의 경우 그동안 축산물에만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**표시대상 농수산물로 확대** 하였습니다.



가공되는 김치류의 포장재 표시는 현재는 사용된 원료중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2가지 원료를 표시 하였으나, 앞으로는 **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는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를 표시**하여야 합니다.

각 음식별 원산지 표시방법

원산지표시 문의

농림수산물부 소비안전정책과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.naqs.go.kr
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www.qia.go.kr



소고기 조리음식

- 쇠고기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
-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, 육우, 젓소로 구분하여 표시
예) 갈비(국내산 한우), 등심(뉴질랜드산), 설령탕(육수 국내산 한우, 고기 호주산), 불고기(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)



돼지고기 조리음식

- 구이용 · 탕용 ·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 · 제공하는 음식
- 배달용은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영수증, 전단지 등 표시 가능
예) 삼겹살(벨기에산), 보쌈(돼지고기 : 미국산), 김치찌개(돼지고기 : 벨기에산과 국내산 섞음)



닭고기 조리음식

- 구이용 · 탕용 ·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 · 제공하는 음식(배달 포함)으로, 배달용은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영수증, 전단지 등 표시 가능
예) 삼계탕(닭고기:국내산), 닭볶음탕(닭고기:미국산), 닭갈비(닭고기:국내산과 미국산 섞음)



오리고기 조리음식

- 구이용, 탕용, 찜용,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 · 제공하는 음식
예) 오리탕(오리고기:국내산), 오리훈제(중국산), 오리로스(국내산과 중국산 섞음)



양고기(염소고기포함) 조리음식

- 구이용, 탕용, 찜용,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 · 제공하는 음식
예) 양고기 샤브샤브탕(양고기:뉴질랜드산), 염소 불고기(염소:국내산), 염소탕(호주산과 국내산을 섞음)



쌀(밥류) 조리음식

- 쌀(현미, 찰쌀 포함)의 원형이 유지된 밥류가 표시대상이며 죽, 식혜, 떡 및 면은 제외
예) 쌀(국내산), 쌀(중국산), 쌀(국내산과 중국산 섞음)



배추김치

-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찌개용 · 탕용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 · 제공하는 음식
-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. 외국에서 제조 · 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판매 · 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
예) 배추김치(배추 국내산, 고춧가루 국내산), 배추김치(배추 중국산, 고춧가루 국내산), 배추김치(중국산)



넙치, 조피볼락, 참돔, 미꾸라지, 뱀장어, 낙지, 명태, 고등어, 갈치

-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,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하여 표시
예) 넙치회(국내산), 참돔회(연근해산), 참돔구이(원양산), 넙치매운탕(원양산, 태평양산), 참돔회(일본산), 뱀장어구이(영국산), 명태(러시아산), 고등어(일본산), 갈치(중국산)

그 밖의 공통사항

-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 등을 섞거나 넙치, 조피볼락 및 참돔 등을 섞은 경우
예) 햄버그스테이크(쇠고기:국내산 한우, 돼지고기:덴마크산), 모듬회(넙치:국내산, 조피볼락:중국산, 참돔:일본산)
- 국내산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쌀, 배추, 넙치, 조피볼락, 참돔, 낙지 등을 사용한 경우는 “국내산”으로 표시하는 대신에 이를 생산한 특별시 · 광역시 · 도 · 특별자치도명이나 시 · 군 · 자치구명으로 표시 가능
-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 대상인 농수산물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, 다만, 농수산물 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 가능
예) 햄버거(쇠고기:국내산), 양념불고기(쇠고기:호주산)

원산지표시 단속권한 및 위반시 처벌

- 음식점 원산지 단속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에게 공동으로 부여하였습니다.
- 거짓표시 : 7년 이하 징역, 1억원 이하 벌금
-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: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인터넷 공표 : 거짓표시를 한 자 또는 2회 이상 미표시를 한 자의 위반내역 등 공개